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의 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공탁법」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2조 송달료잔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2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

4.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u>5년</u>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 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다 음연도 1월 31일까지 <u>정부보관금</u> <u>에 관한 법률 제1조의</u>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 리) ----- ----- <u>10년</u>----- ----- ----- 「<u>정부보관</u> <u>금에 관한 법률</u>」 제1조제1항 ----- -----.</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